

 국토교통부	<h1>보도참고자료</h1>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일시	2021. 3. 30.(화) / 총 8매(본문5, 참고3)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담당자	• 과장 이창훈, 사무관 강근하 • ☎ (044) 201-4152, 4158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담당자	• 과장 이동원, 사무관 박찬 • ☎ (044) 200-4484, 4494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자	• 담당관 박주선, 사무관 박희원 • ☎ (02) 2133-5360, 5362	
경기도 공정경제과	담당자	• 과장 조병래, 사무관 강선희 • ☎ (031) 8008-2240, 229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	담당자	• 팀장 양경희, 변호사 이재호 • ☎ (02) 6363-9201, 9205	
보도일시	2021. 3. 30.(화) 15:00 부터 보도가능		

국토부 · 공정위 · 서울시 · 경기도,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추진

- 서울 · 경기 약 150개 업체 계약서 점검으로 배달기사 피해 예방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이하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은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추진한다.
-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배달기사가 50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 관계부처·지자체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점검하고,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관계부처·지자체는 이번 점검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시작하여,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1

회의 개요

- 3.30(화), 공정위,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조정원은 화상 키포회의를 개최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를 점검하는 방안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 참고: 키포 회의 개요 】

- ◆ 주제: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방안 및 계획
- ◆ 일시: 2021년 3월 30일(화) 15:00~15:30
- ◆ 방법: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
- ◆ 주요 참석자: 공정위 사무처장, 국토부 물류정책관,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경기도 공정국장, 조정원 부원장 등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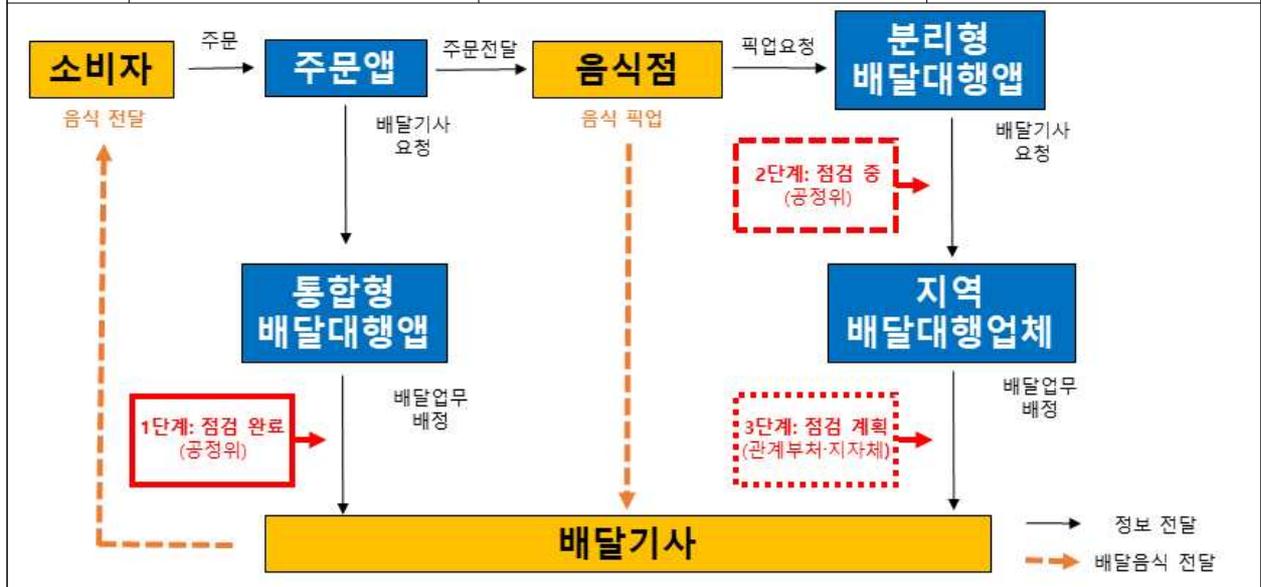
추진 배경

-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 이를 위해 배달대행업체의 다단계 거래구조*를 반영하여 거래단계 별로 계약서 점검이 진행 중이다.
 - *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3社-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완료('21.1.20) 후, 현재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 3社-지역업체 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점검 중
- 이번 계약서 점검은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가 대상이다.
 - 대부분의 배달기사들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배달기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와 배달기사 간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요구하는 등 계약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관계는 다수 영세업체 대상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어, 공정위·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조정원이 협업하여 점검방안을 마련한다.

< 배달기사 관련 단계별 계약서 점검 및 자율시정 추진현황 >

단계	거래당사자	관련 플랫폼 등	진행상황
1단계	통합형 배달대행업 - 배달기사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	점검 완료 (’21.1.20. 보도자료)
2단계	분리형 배달대행업 - 지역업체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점검 중 (계약서 확보·검토 중)
3단계	지역업체-배달기사	생각대로 885개, 바로고 960개, 부릉 500개 지역업체 등	점검 계획 (추진 대상)



3 점검 방안

- (점검대상) 점검인력의 상황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 이번 점검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개사*와 거래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총 700여개)의 약 20%**에 해당한다.

* 사업자(서비스명):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 서울·경기지역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사와 거래하는 약 700여개 업체 중, 배달기사 수가 50명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50여 곳을 선정하였음

□ (점검방법) 이번 점검은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3개 사업자의 협조를 구해,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는다.

○ 제출된 계약서 중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업체로부터 자율시정 계획을 제출받는다.

○ 이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고, 표준계약서*에 대해 안내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이 포함되어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서로, 배달업계와 노동계가 협의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해 마련('20.10월)

○ 지역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인증을 받으면 세제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21.7.27 시행 예정)

□ (역할분담) 이번 점검에서는 공정위·조정원, 국토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불공정한 계약서의 자율시정과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한다.

○ 지자체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확보해 1차적으로 점검하고, 공정위·조정원은 불공정한 계약조항인지 여부를 최종 점검하여 지자체와 함께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 국토부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생활물류법」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한다.

【 참고: 점검 기관별 역할 】

·(공정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불공정한 계약조항인지 여부를 판단해 지자체에 통보하며,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제재방안을 검토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채택한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에 대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자 인증제도를 안내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

·(지자체) 1차적인 점검을 맡아 표준계약서 채택·자율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획이행 여부 등을 점검

·(조정원) 불공정한 계약조항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위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

4

향후 일정

-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시작하여, 「생활물류법」이 시행되기 전인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는 이번 점검이 끝나는 7월 이후에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강근하 사무관(☎ 044-201-41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완료, `21.1.20 공정위, 보도 자료 배포)

□ (점검대상) 3개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 사업자(서비스명):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

□ (영향범위) 배민라이더스·요기요익스프레스에 소속된 전업 기사 약 6천명과 배민커넥터·쿠팡이츠를 이용하는 파트타임 기사

□ 주요 시정사항

- (불리한 배상책임 개선)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
- (불이익조치 전 절차 마련) 배달기사의 계약 위반 시, 계약해지나 프로그램 이용제한 사전에 통보하고 배달기사에 항변의 기회 제공
- (계약 외 업무조건 제한) 배달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 권리·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
- (배달료 지급)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
- (표준계약서 반영) 배달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반영
* 계약 외 업무강요 금지, 특정업무강요 금지, 손해전가 금지,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사항 등

2.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서 점검(진행 중)

□ (점검대상) 3개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 사업자(서비스명):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 (영향범위) 전국 약 2300여개 지역 배달대행업체

□ (중점 점검사항) 지역업체가 계약해지 시 배달망* 이용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위약벌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한 조건이 없는지 여부

*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식점들 및 배달기사들과의 거래 네트워크

1. 주요 내용

-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배달대행 등 소화물배송서비스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제’ 도입
- (표준계약서) 종사자의 적정 작업조건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 (공제조합) 배달기사 등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부담 축소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지원 근거 마련
- (조세특례)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 사업자들에게 대해 취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 조문

구분	조문
인증제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4.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p> <p>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은 자</p> <p>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p>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p>

구분	조문
표준 계약서	<p>제32조(표준계약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략)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p>
조세 특례	<p>제24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공제 조합	<p>제41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p>
행정적 · 재정적 지원	<p>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 설치·개선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단지의 조성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